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군복무·출산크레딧 보장성 강화〉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304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군복무·출산크레딧 보장성 강화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6
다. 관계 기관 의견	8

I. 개요

1.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30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3. 24.
- (3) 회 부 일 : 2025. 3.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와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제도를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군복무·출산크레딧 보장성 강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군복무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도록 하고(안 제18조),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면서,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24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하여는 1자녀당 18개월씩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되,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 시점을 현행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에서 ‘자녀를 얻은 날’로 앞당기려는 것임(안 제19조).

- 참고로,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하고, 첫째 자녀(12개월)부터 출산크레딧을 부여하면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상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 3. 20.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2025. 4. 2. 법률 제20903호로 공포되어 2026. 1. 1.부터 시행될 예정임.

현행	법률 제20903호 (2026. 1. 1. 시행)	개정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 -----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 -----

현행	법률 제20903호 (2026. 1. 1. 시행)	개정안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u>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u> ----. ----- ----- ----- ----- ----	----- ----- ----- ----- ----- <u>「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u> ----- ----. <단서 삭제>
1. ~ 4. (생략) ②·③ (생략) <신설>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u>출산</u> 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u>2 이상의 자녀가</u>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제19조(<u>출산</u> 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u>자녀가</u> ----- ----- ----- ----- ----- ----- ----- ----- ----- -----	제19조(<u>양육</u> 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u>자녀가</u> ----- ----- ----- -자에 대해서는 자녀를 얻은 날에----- ----- ----- ----- ----- -----

현행	법률 제20903호 (2026. 1. 1. 시행)	개정안
추가로 산입한다. <후단 신설> 다만, 추가로 사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③ (생략) <신설>	-----. <단서 삭제> 1. ----2명 이하인----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2. ----- ----첫째 및 둘째-- -----24 개월-----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자녀 수의 인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	-----. 이 경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및 자녀를 얻은 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삭제> 1. ----1명인----- -24개월 2. ----2명----- ----첫째----- -----24 개월---1자녀----- ----- ----- ②·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

현행	법률 제20903호 (2026. 1. 1. 시행)	개정안
	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2008년 1월 1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 3. 20.)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9191호)이 법률 제20903호로 공포(2025. 4. 2.)되어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이에 따라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이 확대되는 등 보장성이 강화되었음.

- (군복무크레딧) 종전 6개월까지만 인정되던 군복무크레딧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도록 하였음.

- (출산크레딧) 종전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던 출산크레딧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첫째 자녀(12개월)부터 출산크레딧을 부여하면서 그 상한(50개월)을 폐지하였음.

□ 개정안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체가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도록 하면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게 하고(군복무크레딧),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에 대하여 부여되는 가입기간을 각각 24개월과 18개월로 연장하되 그 산입 시점을 ‘자녀를 얻은 날’로 앞당기려는 것으로(출산크레딧),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하 “법률 제20903호”라 한다)에 따른 군복무·출산크레

덧보다 보장성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한편, 개정안에 따라 최저 복무기간(6개월) 요건이 삭제될 경우 연평균 1,300명가량이 군복무크레딧의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현역병 등 현황 >

(단위: 명)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1,592	1,254	1,464	1,294	1,060
현역병	1,408	1,017	1,055	844	636
전환복무자	13	5	-	-	-
상근예비역	62	67	39	34	16
사회복무요원	109	165	370	416	408

주: 전환복무는 2022년부터 배정 중단

자료: 병무청

□ 그런데, 법률 제20903호는 군복무·출산크레딧의 보장성 강화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우려 등이 상호 조율되어 여·야 간에 큰 틀에서 합의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려는 안 제19조와 관련하여서도 우리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출산크레딧에 따른 비용의 주된 부분을 현세대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미래세대에 그 비용이 전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었으나, 산입 시점을

앞당기게 되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단기간 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논의된 경과 등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군복무크레딧과 관련하여서는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을 확대하면서 최저 복무기간(6개월) 요건을 삭제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주호영의원(복무기간 전체, 의안번호 제4625호), 한지아의원(복무기간 전체, 의안번호 제8591호), 백선희의원(18개월, 의안번호 제10576호) 및 이수진의원(복무기간 전체, 의안번호 제11651호)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 보건복지부는 군복무로 인한 소득활동 제약을 보상하고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복무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편 출산크레딧과 관련하여서는 2025년 4월 2일 법률 제20903호로 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로써 2026년부터 첫째 자녀에 대하여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추가로 산입가능한 가입기간의 상한(50개월)을 폐지할 예정인바, 출산크레딧 확대와 산입시점을 ‘출산 시’로 변경하는 것은 추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 신중검토

- 막대한 재정소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여·야·정이 합의를 이룬 바에 따라 혜택이 강화된 군복무·출산크레딧이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상황에서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은 국민연금 크레딧 뿐만 아니라 병 봉급 인상¹⁾ 등 다양한 정책지원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유관 정책 간 정합성과 투입 대비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출산크레딧 확대의 경우에도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여타 출산장려 정책 등과의 정합성 및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6

1) 병장 봉급(月): ('15) 171,400원 → ('18) 405,700원 → ('23) 1,000,000원 → ('25) 1,500,000원